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- 1002 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3일

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료 지원을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(참조 : 일자리정책과장, ☎ 450-7053, FAX: 411-1723, E-mail : seonghee0509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그대표자)